

『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곤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라 구미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·대응하고,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구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화학물질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화학사고 고지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9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화학물질관리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은
 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보공개,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
 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